

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

2003. 12. 15.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3년 11월 19일

○ 회부일자 : 2003년 11월 20일

다. 상정일자 :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

○ 2003. 12. 1 :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기획관리실장 한 범 덕)

가. 제안이유

○ 최근 금융권의 저금리기조 등 금융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도가 설치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의 용자대상과 상환조건을 완화하고 공채매입 대상을 축소하여 기금의 안정적 운용과 지역투자 사업에 활성화를 기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기금용자 대상범위 확대
 - 상·하수도, 토지 및 주택개발, 공영개발사업 등 지역개발 분야에 용자하던 것을
 - 정보통신기술(IT), 생명공학기술(BT), 향토지적재산육성 사업 등에도 용자 할 수 있도록 함. (제8조)
- 기금용자 상환조건 개선
 - 용자조건이 상·하수도사업 '2년거치 10년',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 '3년거치 2년', 공영개발사업 등 '3년거치 5년' 균분상환 하던 것을
 - '5년거치 10년' 균분상환으로 통일 조정함. (제10조)
- 상환기간 만료공채이자 미지급규정 삭제
 - 공채 상환기간 만료후의 이자 미지급 규정을 현실에 맞게 삭제함 (제6조)
- 지역개발공채 매입 및 감면대상 조정
 - 현행 공채매입대상을 8개분야에서 4개분야로 축소하고 1,000cc미만 경차 구입·이전시 공채매입 대상에서 제외하며,
 - 공채매입 감면대상을 일부 추가하고 공채매입대상 축소에 따라 현실에 맞게 조정함. (제5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상 만)

- 충청북도지역개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한국은행의 저금리정책이 지속되면서 시중금리가 3%대에 진입함에 따라 지역개발기금의 용자대상과 상환조건을 완화하고 용자대상사업을 정보통신기술(IT), 생명공학기술(BT), 향토지적 재산육성사업으로 확대하고,

지금까지 규칙으로 정하던 “공채의 매입대상과 기준”과 “매입 면제 대상”을 축소하여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서 본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,

- 도내 자치단체가 용자조건과 상환절차가 간소함에도 불구하고 기금활용도가 낮은 실정에 있고, 어렵게 조성한 2,300억원에 달하는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없으며, 특히, 정부의 저금리정책에 따라 공채발행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의 차이로 인한 역마진이 우려되는 등 기금 존폐에 심각한 문제가 예견되는 바 앞으로의 기금 운용방향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4. **질의 및 답변요지** : “생략”

5. **토론요지** : “생략”

6. **심사결과** : 원안가결

7. **소수 의견요지** : “없음”

8. **기타 필요한 사항** : “없음”

9. **심사보고서 첨부서류**

-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